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 8. 17 선고 2020가단6828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1. 7. 20.

판 결 선 고 2021. 8. 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0. 3.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7,272,7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7,272,7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B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317,266,170원이 조세 채권이 있다.

번호	세목	귀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 (단위:원)	채납액 (단위:원)
1	부가가치세	201901	2019.06.30	2019-09-30	25,997,440	29,312,100
2	근로소득세	201906	2019.06.30	2019-09-30	380,690	392,110
3	종합소득세	201801	2018.12.31	2019-10-08	86,528,080	96,911,440
4	근로소득세	201905	2019.05.31	2019-10-08	382,190	393,650
5	근로소득세	201907	2019.07.31	2019-10-31	380,230	391,630
6	부가가치세	201907	2019.12.31	2019-11-19	12,860,000	14,306,750
7	종합소득세	201801	2018.12.31	2019-11-29	86,503,770	96,235,350
8	종합소득세	201901	2019.12.31	2019-12-20	70,238,110	79,323,140
합계					283,270,510	317,266,170

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2020. 2. 20. 사망하자,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와 B 등 5인은 2020. 3. 18. 상속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20. 5.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는 적극재산으로 405,000,000원(= 인천 D 아파트)이 있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 730,666,170원(= 조세 채무 317,266,170원 + 인천 D 아파트 금융채무 413,400,000원)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라.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20. 6. 12. F 앞으로 2020.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가 B에 대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합계 317,266,170원의 조세 채권이 있었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위 조세 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사해행위 및 피고의 악의 추정

살피건대, B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단독 소유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을 포기한 것은,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위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목적물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수익자는 자신이 취득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2,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이 2020. 6. 12. F 앞으로 2020. 5.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서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과 피고가 B로부터 취득한 금액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금액 중 B의 상속지분인 2/11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가액배상 및 그 범위

살피건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317,266,17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이 F과의 매매계약 당시의 매매대금 상당인 80,000,000원이고,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이 40,00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으로서 피고가 B로부터 취득한 금액인 7,272,727원[= (80,000,000원 - 40,000,000원) × 2/11 지분, 원 미만 버림]으로 인정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서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와 관련하여 지출한 장례비용 1,650,000원, 망인 집 청소비용 1,300,000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및 이사비용 4,400,000원, 상속등기비용 2,416,000원, 망인의 재산세 108,580원,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도에 따른 위약금 4,500,000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금액 20,600,000원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 공제될 금액은 근저당권 등과 같이 해당 목적물 자체에 관하여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에 한정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장례비용, 청소비용, 상속등기비용, 재산세, 위약금, 공동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금액은 일반채권자들보다 우선권이 인정되는 채권이 아니므로, 위 각 금액은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또한, 을 제3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있었다거나,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도 알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도 없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금액도 원고에게 배상할 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라,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피고가 B로부터 취득한 금액인 7,272,727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액인 7,272,72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272,7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상

별 지 목 록

[건물]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조적조(시멘트벽돌)슬래브지붕2층

단독주택(3가구) 지하층 31.95㎡(보일러실, 창고)

1층 74.45㎡, 2층 63.84㎡

[토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지 143㎡
- 끝 -

